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9조 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허가신청서 흡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자의 대주주(법 제6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또는 법 제6조제2항의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허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 시까지의 기간)

제4-35조의2제8항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상법」 제662조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제4-35조의2제9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험계약자 등이 제9-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

유 및 근거

제5-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4(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예외) 영 제56조제1항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출

2.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상품 매매

3.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제5-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6-23조제3항, 제7-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1호 중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9-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76조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시행령 제86조제4의2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보험연수원

5.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6. 그 외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9-15조의2를 삭제한다.

제9-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8조(손해사정사의 영업기준) ① 시행령 제98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할 것

2.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법 제18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할 것.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서의 내용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할 것

4. 직전 분기말 기준 소속 손해사정사가 100인 이상인 손해사정업자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는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영업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서류의 보완 등) ①·② (생략)	2~5조(서류의 보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신 설></u>	<u>③ 영 제9조 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u> <u>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u> <u>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u> <u>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u>
<u>1. <신 설></u>	<u>1. 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에 걸리는 기간</u>
<u>2. <신 설></u>	<u>2. 허가신청서 흡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u>
<u>3. <신 설></u>	<u>3.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자의</u>

대주주(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또는 법 제6조제2항의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허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 ⑦ (생략)

⑧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 바목·사목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게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 가. ~ 아. (생 략)

<신 설>

자. (생 략)

⑨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다 목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3.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상법」 제662조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에 관한 사항

차. (현행 자목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보험계약자 등이 제9-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및 근거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⑩ · ⑪ (생 략)

<신 설>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생명보험계약,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

2. · 3. (생 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계약

5. · 6. (생 략)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5-4조의4(특별계정의 운용전문)

인력 확보의무 예외) 영 제56조

제1항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출

2.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상품 매매

3.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업무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현행과 같음)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6. (현행과 같음)

제4호 내지 제6호의 보험계약은
일반계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
산서에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계상한다.

④·⑤ (생략)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신용위험액은 단기 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상금융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 및 대차대조표 난외에 계상된 항목 중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일반계정과 감독규정 제5-6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⑤ (생 략)

1. 일반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일반계정 및 감독규정 제5-6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

제5호 및 제6호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4

----- 제5호 및 -----

제6호

⑤ (현행과 같음)

1

-----제5호 및 제6호 -----

호에 해당하는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2. (생 략)

⑥·⑦ (생 략)

제9-13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9-15조의2(손해사정업 영업기준) 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9-18조(손해사정사의 의무) ①

-----.

2.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9-13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76조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시행령 제86조제4의 2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보험연수원

5.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6. 그 외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삭 제>

제9-18조(손해사정사의 영업기

손해사정사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법 제18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준) ① 시행령 제98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할 것

2.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신 설>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전자
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
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하
여 보험회사(법 제18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
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할 것.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제
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
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
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
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
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
사정서의 내용 중 감독원장이 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할
것

4. 직전 분기말 기준 소속 손해
사정사가 100인 이상인 손해사
정업자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 설>

<신 설>

②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서의 내용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 설>

손해사정업자는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는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영업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